

윤리 규정

2001. 2. 8.제정
2001. 12. 19.개정
2003. 6. 2.개정
2004. 1. 6.개정
2005. 12. 22.개정

전 문

이 규정은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인증자의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Financial Planner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1장 윤리원칙과 제2장 관련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윤리원칙은 자격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의 핵심사항으로 기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규칙은 윤리원칙에 근거한 실무지침으로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격인증자 및 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등 자격인증 유자격자와 한국FPSB의 회원 및 한국FPSB와 체결한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윤리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자격인증자라 함은 경우에 따라 자격인증 유자격자 또는 한국FPSB의 회원 또는 윤리규정 준수 의무자 등으로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관련규칙의 조항이 해당윤리원칙의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제1조 성실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규칙은 100에서 199까지의 일련번호로, 제2조 객관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규칙은 200에서 299까지의 일련번호로 조항을 부여하고 있다.

제1장 윤리 원칙

제1조 성실성의 원칙 (Integrity)

자격인증자는 항상 고객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객관성의 원칙 (Objectivity)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능력개발의 원칙 (Competence)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성의 원칙 (Fairness)

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 원칙 (Confidentiality)

자격인증자는 소송 등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가정신의 원칙 (Professionalism)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업무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근면 봉사의 원칙 (Diligence)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련 규칙

제100조 성실성 관련규칙

(101) 자격인증자는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나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자격인증자는 소속기관의 규모, 전문분야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자격인증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격인증자의 업무활동 및 능력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기대를 초래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홍보활동이란 연설, 회견, 서적, 인쇄물, 전자출판, 세미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출연, 비디오 자료 등을 포함한다.
- 3) 자격인증자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FPSB 또는 다른 단체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102)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허위,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3)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격인증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안에서 고객의 금융자산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2)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3)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및 기타자산을 수령하는 때에는 법률이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령권한이 있는 고객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확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4)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개인금융 또는 기타자산 (소속법인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 포함)과 공동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고객별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들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5)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및 기타자산의 보관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 객관성 관련규칙

- (201)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여야 한다.
- (202)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0조 능력개발 관련규칙

- (301) 자격인증자는 관련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최소한의 계속교육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 (302)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제400조 공정성 관련규칙

- (401)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의 범위, 이해의 상충, 보수체계, 보유자격의 내용, 업무제휴관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
 - 2) 기타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
- (402)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과 보수의 근거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자격인증자의 업무수행 원칙 또는 방침을 밝히는 내용
 - 2) 자격인증자(법인체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소속법인의 대표 또는 고용주 포함)의 학력, 실무경력, 보유자격, 전문분야 등 자질 증명사항을 나타내는 이력사항 및 수행업무의 내역
 - 3) 보수계산에 관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 상세내역 (소개료가 있는 경우 상세한 내역을 포함한다)
 - 4) 보수계산의 기준이 수수료, 커미션 또는 수수료와 커미션을 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 5) 다른 전문가(법인포함)와 주요한 대리인 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련 보수(수수료 또는 커미션) 내역
 - 6) 고객과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403)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의 객관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04) 고객과의 계약체결후에 이해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405) 1년 이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장기고객에 대하여서는 매년 제402조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406) 자격인증자의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407) 자격인증자는 신규고객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01조의 비밀유지 관련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또는 과거 고객의 추천을 포함하는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408)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수행관련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409) 자격인증자가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체,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 또는 대리인일 경우에도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10) 자격인증자가 법인체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고용주의

합법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11) 자격인증자는 (1) 외부의 업무협조가 있는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 고용관계의 변동이나 자격인증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12) 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파트너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인증자는 재직기간 중 동료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에게 적절하고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413) FP법인의 대표 또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신용상황, 능력 및 경력, 자격증명서, 법적 지위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관련 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 (414) 금융기관의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인 자격인증자가 동 직책을 물러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지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415) 자격인증자가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용주 또는 파트너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보수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16) 자격인증자가 고객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계약의 위험도, 이해상충 및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다른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0조 비밀유지 관련규칙

- (501)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관계 및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객을 위한 거래 또는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에 따르는 경우
 - 3) 자격인증자 자신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위한 경우
 - 4) 고객과의 민사소송에 따른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 (502) 자격인증자는 고용주에 대하여서도 고객의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503) 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파트너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인증자는 재직기간 중 및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는 등 동료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에게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600조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 (601)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 표장을 한국FPSB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602) 자격인증자는 다른 금융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상호 예의를 지켜야 한다.
- (603) 자격인증자는 다른 자격인증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인증자로서의 정직성, 신뢰성 및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을 야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이를 한국FPSB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4) 자격인증자는 다른 자격인증자 또는 금융전문가가 중대한 비전문가적인 행위나 사기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계당국이나 업계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5) 자격인증자는 소속 조직내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직속상사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주에게 관련증거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조직내에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를 포함한 업계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6)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관계당국의 규정 및 지침
 - 2) 한국FPSB의 제반 규정 및 방침
- (607)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 한국FPSB의 표장 또는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08) 자격인증자는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609)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본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610) 자격인증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악의나 협박을 목적으로 이 규정을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611) 자격인증자는 라이선스비 납부 및 자격인증의 갱신에 따른 윤리규정준수서약서 제출 등 자격인증자의 자격유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00조 근면봉사 관련규칙

- (701)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 (702)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토하여

- 1)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 2)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703)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
- (704)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제안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705)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자격인증자의 자격과 종사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규칙중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매출업무에만 종사하는 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제401조의 일반적인 통보의무는 적용되나 제402조의 서면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CFP자격인증자와 AFPK자격인증자 등 모든 자격인증자 및 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등 자격인증 유자격자와 한국FPSB의 회원 및 한국FPSB와 체결한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윤리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 자는 이 규정의 준수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신뢰제고와 자부심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정배경) 이 규정은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FP표준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채택을 권장하고 있는 미국 CFP-Board(CFP표준위원회)의 윤리 및 책임규정(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